

제711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- 안 건 명 : 목1호 수문(이중)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
- 심 사 일 : 2013. 7. 16
- 사업개요
 - 용역비 : 126,533천원
 -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3개월
 - 사업규모 - 목1호수문(이중)수문 : 4.0×2.8×3련(6문)
 - 목3호수문(이중)수문 : 4.0×3.3×1련, 3.0×3.3×3련(8문)
- 심사결과 : 적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사내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]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미대상	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규정에 의거 1종 시설물(수문)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안전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시행 필요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○용역비 조정 : 126,533천원 → 84,876천원 (감41,657천원, 용역비 대비 - 32.9%) [심사내역] ○ 보정계수 추가적용 직접인건비[전체(외업)] 조정 ▶ 목1호 수문 : 64인(21인) → 52인(17인) ▶ 목3호 수문 : 94인(31인) → 94인(31인) ※ 목1호 수문 인접구조물 보정계수 0.7 추가적용 ○ 기계기구 손료 : 10% → 3% ○ 차량운행비 : 적용제외 ○ 구조해석 :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 포함으로 대가적용 제외 ○ 코어채취는 비파괴시험으로 대체 적용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- 관계법령과 "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(수문편)"에 의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 - 본 용역의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자선·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적정